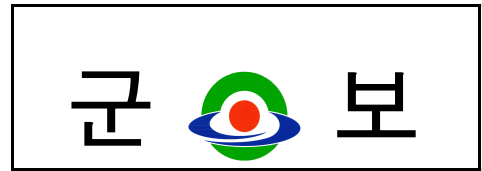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187호 2019. 9. 9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예천군 도로구간(1차 종속구간 기초번호) 변경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19-48호)
-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19-49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도로구간(1차 종속구간 기초번호)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및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6조의4,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도로구간(1차 종속구간 기초번호)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9. 9.

예 천 군 수

1. 고 시 일 : 2019. 9. 9.
2. 고시방법 : 군 홈페이지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(1차 종속구간 기초번호) 변경사항(붙임 참조)
4. 도로구간 변경 절차

주민의견 수렴공고	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	심의 마친 날부터 ⇒ 10일 이내	심의결과 공고
14일 이상		도로명주소 위원회 개최		변경내용 및 변경절차

공고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	서면동의 받은 날로부터 ⇒ 10일 이내 서면동의 만료일부터 ⇒ 10일 이내	고시
	주소사용자의 1/2이상		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
	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		공고
	주소사용자의 1/2미만		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

※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6조의4 제6항에 따른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.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(054-650-6924)으로 문의바랍니다.

붙임 : 도로구간(1차종속구간 기초번호) 변경조서 및 현황도 1부. 끝.

도로구간 변경(종속구간) 조사 및 현황도

1. 죽안길 112 종속구간

구분	도로명	도로구간		중심선	길이(m)	폭(m)	위계	기초간격(m)	기초번호	변경사유	관할행정구역
		기점	종점								
변경전	죽안길	중평리 175-8	죽안리 345	도면 참조	183	3	길	20	112-1 → 112-20	종속구간 변경	
변경후	죽안길	중평리 175-8	죽안리 345	도면 참조	250	3	길	20	112-1 → 112-34		

도로구간 변경 현황도

변경전	변경후
	
<기존구간-180m> 죽안길 112-1~112-20	<변경구간-250m> 죽안길 112-1 ~ 112-34

▣ 도로구간 변경(종속구간) 조서 및 현황도

1. 죽안길 120 종속구간

구분	도로명	도로구간		중심선	길이(m)	폭(m)	위계	기초간격(m)	기초번호	변경사유	관할행정구역
		기점	종점								
변경전	죽안길	중평리 175-8	죽안리 345	도면 참조	320	3	길	20	120-1 → 120-36	종속구간 도로없음	-
변경후	죽안길	중평리 175-8	죽안리 345	도면 참조	85	3	길	20	120-1 → 120-10		

도로구간 변경 현황도

변경전	변경후
	
<기존구간-320m> 죽안길 120-1 ~ 120-36	<변경구간-85m> 죽안길 120-1 ~ 120-10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및 변경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9. 9.

예 천 군 수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경상북도 예천군 지평로 893-12외 12건

종전 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 사유	도로명주소 부 여 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
별 도 열 람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제조사팀(☎054-650-6924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